

## 대구광역시 달성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34
----------	----

제출일자 : '99.  
제출자 : 날 싱



### 1. 개정 이유

'95.12. 6.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의 종류에 군도가 신설 되었고, 군도의 도로관리청이 군수로 되었으며, 폭 20m미만 군도에 대한 점·사용료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이 군수로 이양되어 도로 점·사용료 전액을 군수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군도(폭 20m미만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군세임으로 징수하여 군세임 중대코자 함.

### 2. 개정 근거

-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도로법 제17조(군도)
- 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
- 대구광역시 건설 13330-1740('98.11. 4.)의 구도(폭 20m미만도로) 점용료 이양에 의함

### 3. 주요 콜자

- 군도(폭 20m 미만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군세임으로 부과·징수
-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 삭제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입법예고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6.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다시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 3 조(점용료의 산정)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m<sup>2</sup>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예: 9,950→9,900원)

6. “별표1”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별표1”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멘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별표1”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률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9.“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점용료의 부과) ①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④공익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분의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市)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이상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시세임으로 균도(폭 20m미반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군세임으로 부과·징수 토록 한다.

제 5 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간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접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의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접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 7 조(접용료의 징수) ① 접용료의 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접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접용료의 진액을 징수 한다.

2. 접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접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

제 8 조(준용) 접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9 조(징수의 위임) ① 군수는 접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접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표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600			
	전 주 와 유사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m^2$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 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 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 관, 송유관, 송 열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3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6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9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2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50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2,2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3,750	
		직경 3.0m 초과			5,250	
		직경 0.1m 이하			200	
기타의 관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m	1년	4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9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1,3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8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2,2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3,3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5,600
		직경 3.0m 초과			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 사설 안 내 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 사설 안 내 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text{m}^2$	1일	100
		기 타	"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text{m}^2$	1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로 횡 단	표시면적 $1\text{m}^2$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 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 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text{m}^2$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text{m}^2$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자동판매기, 상품전시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전시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막, 발판, 대기 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m <sup>2</sup>	1일	1년	100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2)

##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관 계 법령 발췌

### □ 도로법

-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도로법시행령

-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전선·빈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주요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직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빌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